

#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(공공조달 멘토제도)

상생협력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판로가 열립니다!

## □ 공공조달 멘토제이란?

대기업(또는 중소기업)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## □ 지원목적

- ①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촉진
- ②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소재·부품의 국산화

## □ 참여방식

- 기업간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 입찰 및 조달계약
  - 주관기업(중소기업)이 주계약자로 상생협력제품을 납품
  - 협력기업(대·중소기업)은 상생협력제품의 생산 지원 또는 소재·부품 지원



## □ 관련규정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2조의3
-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10호)

### 제도 관련 용어

#### [참여기업]

- 주관기업 :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(또는 조합, 단체)
- 협력기업 :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, 중소기업
  - ① 멘토기업 : 혁신성장과제에 참여,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
  - ② 소재·부품기업 : 소재·부품과제에 참여, 제품의 핵심 소재·부품을 지원하는 대기업, 중소기업

[상생협약] 기업간 지원분야, 주체별 역할, 성과목표, 배분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

□ 지원과제

과제명	지원 내용	선정 혜택
혁신성장	주관기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역량이 부족한 경우 협력기업이 멘토로써 생산시설, 공정기술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납품	- 입찰가점 3점 (계약이행심사) - 주관기업 직접생산기준 인정 (협력 생산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)
소재부품	기술력이 있는 핵심 소재·부품을 주관기업에 지원하여 품질과 혁신성이 향상된 상생협력제품 생산하여 납품	- 입찰가점 3점 (계약이행심사) - 대기업 공공조달 간접 진출 (납품기업에 소재부품 지원)

① 혁신성장과제



- 기업의 신청자격

	주관기업	협력(멘토)기업
기업구분	창업기업 또는 소기업	중소기업
직접생산	직접생산확인기준 X	직접생산확인기준 ○
	직접생산확인기준 ○	직접생산확인기준 ○ 또는 X
협약조건	1:1 협약 (중소기업:중소기업)	

※ 주관·협력기업이 보유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함

- 제품의 신청자격

①	상생협력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(334개 분류)
②	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기술 적용 제품 (최근 5년) 또는
	기술개발제품 (판로지원법에 따라 유효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)

## ② 소재·부품과제



### - 기업의 신청자격 및 협약조건

	주관기업	협력(소재·부품)기업
(중소기업간)	중소기업 (1개 이상)	중소기업
(대기업참여)	중소기업 (5개 이상) 또는 중소기업조합 (단체)	대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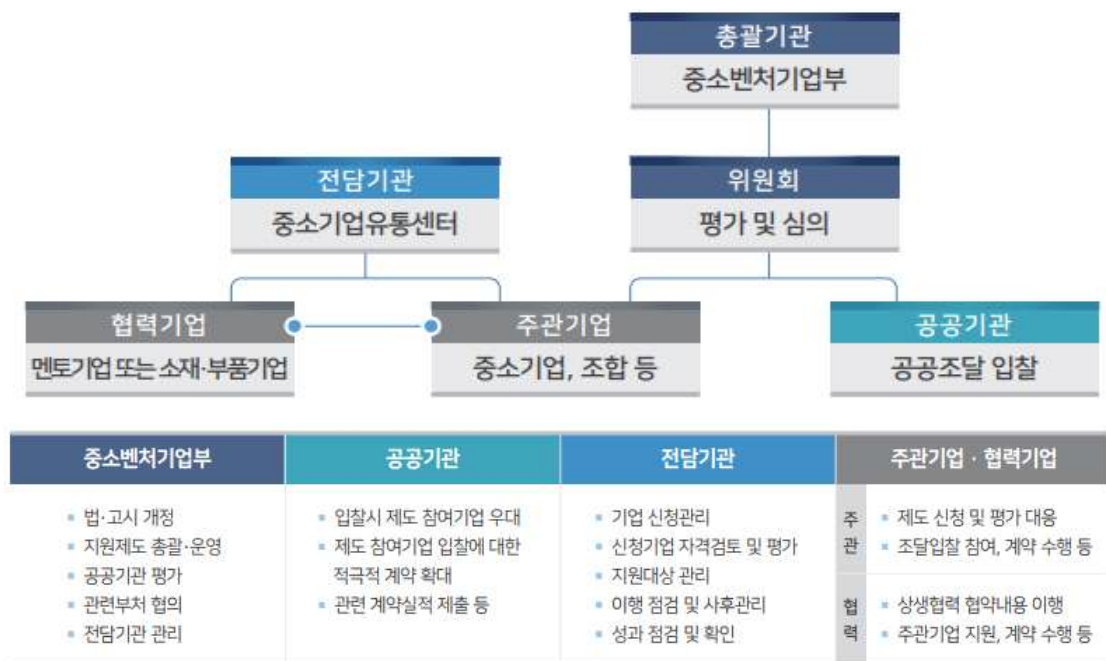
  

해당기준 중 1개	소재·부품전문기업확인서
	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적용된 소재·부품
	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·부품

### - 제품의 신청자격 확인

확인	상생협력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(334개 분류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□ 추진체계



## □ 추진절차



구 분		관련내용	수행기관
STEP1	시행계획 공고	- 참여기업 모집 공고 (상생협력 대상 제품, 신청자격 등을 포함)	중소벤처기업부
	신청·접수	-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, 참여기업 신청 (공통 서류와 과제별 서류 확인하여 온라인 제출)	주관기업 협력기업
STEP2	자격검토	-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(상생협약서,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)	전담기관
	대면평가	- <b>5인 이상 평가위원 구성, 70점 이상 적합</b> 신청시 제출 서류로 평가 ( <b>별도PPT 제출 없음</b> )	대면평가위원회 (전담기관)
	현장평가	- 현장 확인을 위해 실시하고, 대면평가위원 중 <b>1인 이상 참여 가능</b>	현장평가위원 (전담기관)
	지원대상 심의	- 심의위원회에서 대면평가, 현장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확정	심의위원회 (중소벤처기업부)
STEP3	공공조달 참여	- 지원대상 선정 후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 참여, 공공기관 구매 실시	주관기업 협력기업
STEP4	중간점검 및 완료평가	- (중간점검) <b>1년 경과</b> 시 대면 또는 서면평가 - (완료평가) <b>5인 이상 평가위원이</b> 평가를 실시	완료평가위원회 (전담기관)
	점검 및 관리	- 구매계약 등 목표 실적 점검	중소벤처기업부

□ **참여시 유의사항**

○ 상생협약 체결 관련

-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**신청 전에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**하여야 하며,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**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**하여야 함
- ② 협약 체결시 다음 사항을 상생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

상생협약서 포함 내용	①	협약 당사자의 지위,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, 권한
	②	상생협력 지원분야
	③	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
	④	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
	⑤	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
	⑥	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
	⑦	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	⑧	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

- ③ 협약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**협력기업은 주관기관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됨**

○ 참여 유의사항

-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제9조의3 (**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**)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**참여할 수 없음**
- ② 주관기업과 **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**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하여 **참여할 수 없음**
- ③ 지원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,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**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**이어야 함
- ④ 혁신성장과제에 참여하는 **협력기업(멘토기업)은 최대 3개의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**할 수 있으며,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원분야가 동일한 중소기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**2020. 5. 19 (화) ~ 7. 17 (금)**
- 신청방법 : 공공구매종합정보망 (SMPP)를 통한 온라인 (인터넷) 신청

※ 공공구매종합정보망 (<http://www.smpp.go.kr> - 제도신청 - 상생협력제도 신청) 접속



○ 설명자료 안내

※ 온라인 제도 설명 영상 (중소벤처기업부 설명)  
-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3bLJAtQPeRw>

[유튜브 바로가기](#)

※ PPT 설명 자료 다운로드 (공공구매종합정보망)  
- <http://www.smpp.go.kr/cst/wnwncoop/info/WnwnNoticeListVwEve.do>

[자료 다운로드](#)

○ 추진일정

구 분	신청접수	평가선정	계약 및 납품
1차 공고	'20. 1. 31. ~ 3. 30.	완 료	수요 발생 시 (상생협력제도 지원기간 내)
2차 공고	'20. 5. 19. ~ 7. 17.	'20. 7월 ~ 9월	
3차 공고	'20. 9월	'20. 10월 ~ 12월	

※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안내 및 문의

구 분	담당기관	문의사항	전 화
전담기관	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	과제 접수, 평가 등	☎ 042-712-5633~7

○ 홈페이지 안내

구 분	사이트명	주 소
상생협력제도 신청	공공구매종합정보망	<a href="http://www.smpp.go.kr">http://www.smpp.go.kr</a> (제도신청 - 상생협력제도 신청)

## □ 신청 제출 서류

### ○ 공통제출 서류

신청서류		비고
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1부		필수
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사업계획서 1부		필수 (평가 활용,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)
③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1부		필수
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		필수 (주관기업, 협력기업 각 1부)
혁신성장 과제	⑤ 기술개발제품 보유 인증서 및 관련 공문 사본 1부 ↳(참고) 인증서 별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확인	주관기업 신청 제품
	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↳(참고)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 기준 확인	주관기업 신청 제품
소재부품 과제	⑥ 소재·부품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↳(참고) 소재·부품기업 확인 서류 제출 기준 확인	협력기업 신청 소재·부품

### ○ 가점확인 서류

신청서류		비고
○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		해당시 :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
○ 수출실적증명서 (직전년도, 전전년도) 각 1부		해당시 : 수출기업 가점 검토(소재부품기업)
가 점 확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창업기업</b>은 설립연월일 확인 (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</li> <li>-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법인설립등기일 기준</li> </ul> </li> <li>■ <b>고용 우수기업</b>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</li> </ul> </li> <li>■ <b>수출 우수기업</b>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확인</li> <li>■ <b>기술개발제품</b>은 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 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)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</li> </ul>	

## [ 참고자료 ]

###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?

#### □ 공공구매제도

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(물품, 공사, 용역)을 구매(계약을 포함) 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

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, 용역, 공사의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



#### □ 적용법령

- 일반적 내용(절차) :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, 계약예규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
- 중소기업 지원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- 여성기업 지원 :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
- 장애인기업 지원 :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
- 조달사업 운영 및 관리 : 조달사업법
- 중소 SW 사업자 지원 : 소프트웨어산업법
-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: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#### □ 용어 알고가세요!

- 중소기업 :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
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- 제품 : ① 물품 ② 공사 ③ 용역
- 공공기관 :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정
  - ※ 국가기관, 지자체(교육청 포함)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 
특별법인(중기중앙회, 농협중앙회, 상공회의소 등)  
지방공사·공단, 지방의료원



# [ 참고자료 ]

## 공공구매 관련 주요제도

### □ 공공구매 주요제도



#### ① 구매목표 비율제도

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

- 중소기업제품 :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50%이상 의무 구매
- 기술개발제품 :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구매총액의 15%이상을 의무 구매
- 여성기업제품 : 물품·용역의 각각 5%, 공사의 3%을 의무 구매
- 장애인기업제품 :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%를 의무 구매

####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

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가능

-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: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지정하는 18종에 해당
- 성능인증제도(EPC) :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·증명하는 제도
-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: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제품 구매하도록 유도

#### ③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

2억원 미만의 물품·용역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 제한 경쟁 의무화

(일반제품) 1억원 미만	(일반제품) 1억원~2억원미만	(추정가격 무관) 중기간경쟁제품
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	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	중기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

## [ 참고자료 ]

###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?

#### 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

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

#### □ 지정 요건

- ① 제품 기준 :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고,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이상
- ② 세부품목 기준 :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
- ③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

#### □ 지정 기간

-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유효기간은 3년 (3년마다 지정)

#### 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?

- ① 공공기관이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해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
- ② 중기간경쟁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필수 요건  
(생산설비, 필수인력, 주요공정, 생산공장 등)  
※ 대기업, 수입제품 등으로 납품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, 납품계약 이후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
- ③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하여야 함